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 변경 주요 내용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소득 대비 0.9182% (2023년도 0.09082% 대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여 계산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9	'20	'21	'22	'23	'24	'25 동결
보험료율 (소득대비)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인상률	(19.4)	(24.4)	(15.6)	(8.5)	(5.9)	(1.09)	(1.09)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인상률	(15.3)	(20.4)	(12.4)	(6.5)	(4.4)	(1.09)	(1.09)

□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년도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024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2025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요양시설 수가 7.37%는 인력배치 2.1:1 기관 해당, 2.3:1 인력배치 운영기관은 2.12% 인상

-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6,210원)으로 인상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2,700원 (본인부담률 20% 기준)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증가액)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13,700

※180분(3시간) 기준 수가 인상액 1,030원,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시간당 170원 ↑

□ 기타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 인상
-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월→'25년 11월),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
-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

- ▶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 ▶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